

의안 번호	1898	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	------	--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. 1. 28.(금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2. 1. 28.(금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2. 2. 8.(화)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삭제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 의회사무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삭제
 - 가.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“보건소장, 동장, 의회사무국장”에게 위임 처리⇒ “의회사무국장” 삭제
 - 나. 의회사무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삭제(별표3)
 - [별표 3] 의회사무국 직원 중 별정직·「지방공무원법」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·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

4. 근거법규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

5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울산 광역시 중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삭제하는 것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근거법규

지방자치법 제117조

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